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출연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에 따르면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에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결과 및 2025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 추진 필요성

- 2024년 연수계획 시행 결과, 연수내용 및 업무 효율성 측면 등 전체적인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세부결과 [별첨 2] 참고)
- 또한 연수계획 시행을 위탁함으로써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으므로 2025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제작, 장소대관, 연수안내 등)

라. 위탁 기간: 2025. 4. ~ 2025. 12.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
- 현재 수탁기관은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바. 예산 규모: 금118,621,000원(금일억일천팔백육십이만일천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78,621,000원(금칠천팔백육십이만일천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나. 위탁 성과보고서: 별첨 2

【별첨 1】

관계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1호, 2021. 6. 1., 일부개정]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6. 10.]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94호, 2019. 6. 10., 일부개정]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결과 보고

평생교육과

I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평생교육과-8537, 2024. 4. 8.)

II 2024년 연수 운영 개요

○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운영 형태	· 학원 및 교습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학원단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 교습소단체: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연수 대상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외국인강사	
연수 기간	· 2024. 4. ~ 12.	
연수 방법	· 온라인연수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집합연수 실시)	· 2023, 2024년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대상

○ 연수 주요 내용

- 학원 관련 법령 개정 및 준수 사항
- 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 시설 및 차량 등 재난 대비 안전 관리
- 개인정보보호, 어린이 안전교육
-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III 2024년 연수 실시 결과

1 결과 총괄

(단위: 명)

구 분	연 수 결 과				계		외국인강사	
	학원설립·운영자		교 습 자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5,358	8,502 (55.4)		0 (0)	15,358	8,502 (55.4)	5,019	447 (8.9)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0 (0)	10,170	6,522 (64.1)	10,170	6,522 (64.1)		
계	15,358	8,502 (55.4)	10,170	6,522 (64.1)	25,528	15,024 (58.9)	5,019	447 (8.9)

2 최근 3년간 실시 결과

(단위: 명, 천원)

구 분	운영 형태	연 수 결 과				예 산 액	외국인강사*	
		학원설립·운영자		교 습 자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2022년	위탁	15,210	10,080 (66.2)	9,787	6,302 (64.3)	164,750	5,321	578 (10.8)
2023년	위탁	15,260	11,042 (72.3)	9,957	5,987 (60.1)	164,750	5,204	35 (0.6)
2024년	위탁	15,358	8,502 (55.4)	10,170	6,522 (64.1)	148,275	5,019	447* (8.9)

* 외국인 강사 연수가 2023년 집합연수로 인해 참석자 감소되었기에 2024년 온라인 연수 실시

IV 예산 집행 현황

1 총괄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 산 집 행 현 황			비 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03,275,000	103,275,000	0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45,000,000	45,000,000	0	
계	148,275,000	148,275,000	0	

② 연수주관별 정산 내역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 예산 집행

(단위: 원)

위탁액	지출액	잔액 (A)	환수액 (B)	이자발생액 (C)	반납금액 (A+B+C)
103,275,000	103,275,000	0	-	95,855	95,855 ※ 반납 예정

2) 세부 내역

(단위: 원)

지출내용	지출액	정상사용금액	환수금액	환수금액 내역	비고
강사료 (원고료 포함)	7,600,000	7,600,000	-		
인쇄비	10,950,000	10,950,000	-		
식대	6,818,500	6,818,500	-		
인건비	39,351,270	39,351,270	-		
온라인 연수 비용	25,786,700	25,786,700	-		
운영비 (사무운영비, 운송비 등)	9,401,730	9,401,730	-		
기타부대경비 (통신료, 공과금 등)	3,366,800	3,366,800	-		
합계	103,275,000	103,275,000			

○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1) 예산 집행

(단위: 원)

위탁액	지출액	잔액 (A)	환수액 (B)	이자발생액 (C)	반납금액 (A+B+C)
45,000,000	45,000,000	0	-	8,879	8,879 ※ 반납 예정

2) 세부 내역

(단위: 원)

지출내용	지출액	정상사용금액	환수금액	환수금액 내역	비고
강사료 (원고료 포함)	900,000	900,000	-		
우편요금 (인쇄비포함)	6,946,840	6,946,840	-		
식대	1,623,600	1,623,600	-		
인건비	4,856,000	4,856,000	-		
온라인 연수 비용	30,000,000	30,000,000	-		
운영비	273,110	273,110	-		
기타부대경비 (수수료, 보험 등)	400,450	400,450	-		
합 계	45,000,000	45,000,000			

V

연수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평가 의견

1] 만족도 조사결과

○ 설문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수 참여자	응답자	응답률	비고
학원설립·운영자	8,502	6,154	72.3	
교습자	6,522	6,502	99.6	

○ 문항별 만족도

(보통 이상 비율, 5점 척도, 단위: %)

구분	연수장소 (홈페이지)	연수내용	업무 연관성	시간배분	내용 이해도	강사 전문성	행정 서비스
학원설립·운영자	96.6	97.3	97.7	92.9	98.0	97.6	97.7
교습자	99.3	99.3	99.0	94.6	99.7	99.6	99.3

② 운영 평가 의견

○ 문항별 응답 현황

1) 학원설립 · 운영자 대상

(단위: 명, %)

평가문항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계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1. 연수 장소의 적합성	2,796	45.4	2,096	34.0	1,052	17.0	41	0.6	169	2.7	6,154
2. 연수 자료의 충실성	2,740	44.5	2,188	35.5	1,058	17.19	30	0.4	138	2.2	6,154
3. 업무수행과 연수와의 적절성	2,672	43.4	2,173	35.3	1,167	18.9	28	0.4	114	1.8	6,154
4. 연수 시간배분의 적절성	2,359	38.3	1,846	29.9	1,512	24.5	268	4.3	169	2.7	6,154
5. 연수 내용의 이해도	2,606	42.3	2,382	38.7	1,049	17.0	12	0.1	105	1.7	6,154
6. 강사의 만족도	2,649	43.0	2,360	38.3	1,020	16.5	21	0.3	104	1.6	6,154
7. 연수담당자의 행정서비스	2,595	42.1	2,253	36.6	1,156	18.7	37	0.6	113	1.8	6,154

2) 교습자 대상

(단위: 명, %)

평가문항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계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응답 수	응답률	
1. 연수 장소의 적합성	3,553	54.6	2,286	35.2	619	9.5	24	0.4	20	0.3	6,502
2. 연수 자료의 충실성	3,304	50.8	2,494	38.4	659	10.1	28	0.4	17	0.3	6,502
3. 업무수행과 연수와의 적절성	3,084	47.4	2,397	36.8	954	14.6	41	0.6	26	0.4	6,502
4. 연수 시간배분의 적절성	2,586	39.7	1,976	30.3	1,588	24.4	282	4.3	70	1.1	6,502
5. 연수 내용의 이해도	3,132	48.1	2,596	39.9	754	11.5	9	0.1	11	0.2	6,502
6. 강사의 만족도	3,191	49.0	2,588	39.8	696	10.7	16	0.2	11	0.2	6,502
7. 연수담당자의 행정서비스	3,065	47.1	2,525	38.8	868	13.3	26	0.4	18	0.3	6,502

③ 분석 결과

○ 연수 만족도 높은 수준 유지

- 평가문항별 만족도 2024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 유지

※ 내용 이해도에서 98%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며 연수 시간 배분의 적절성 항목 이외 나머지 부분의 만족도가 96%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 전년대비 참석률 하락

- 2023년에 비해 연수 전체 참석률이 하락하였음 (67.5%→58.9%)
- 기존에는 연수 불참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되어 연수 참석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151호, 2021. 4. 13.)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연수 불참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폐지하였고(2023. 4. 13.) 이로 인해 참석률 하락에 다소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최근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대상 인원 및 참석 현황>

(단위: 명, %)

구분	횟수(기간)	대상인원	참석인원	참석률
2022년	8월 ~ 12월	24,997(5,321*)	16,382(578)	65.5(10.8)
2023년	7월 ~ 12월	25,217(5,204*)	17,029(35**)	67.5(0.6**)
2024년	4월 ~ 12월	25,528(5,019*)	15,024(447**)	58.9(8.9**)

* 외국인 강사 대상 연수를 2022년 부터 실시함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

** 2023년 외국인 강사 대상 연수를 집합연수로 실시함으로 연수 참석자 감소, 2024년은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여 참석률 상승

- (학원설립·운영자) 총 15,358중 8,502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전년 대비 16.9% 감소하였고, 참석 인원은 2,540명 감소함
- (교습자) 총 10,170명 중 6,522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고, 참석 인원은 535명 증가함
- (내·외국인강사)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외국인 강사 연수의 경우 2022년도에 다시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5,019명 중 447명이 참석하였음. 내국인 강사의 경우 트래픽(이용자 접속량)비용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으나,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여 강사 및 직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VI 개선 방향

① (결과 반영)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2025년 연수 시 반영

- 연수 만족도 수준 유지

- 연수 대상자들이 필요한 내용(학원법 개정사항, 현장 사례 중심 등)을 적극 반영하여 96%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151호, 2021. 4. 13.)에 따라 온라인 연수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신규 학원장 등에 대하여는 집합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진행

○ 전문성 강화 및 목적에 충실한 연수 실시

- 집합연수 시 목적 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현장 사례 중심 내용을 강의안과 교재에 포함하고,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 위주의 연수를 실시

○ 참여도 제고

- 2025년에는 온라인 연수 기간의 증대, 연수 내용의 충실화, 지속적인 안내 실시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특히 외국인 강사 연수의 경우 입국 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연수를 수강한 외국인은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에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임

② (소통 공유) 연수 교재 및 강의안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공유함으로써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 수탁자들과의 공유를 통한 내용의 충실화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연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끝.